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4년 6월 12일(수) · 주간제 24호 · 통권 제 1679호 ·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4/ 6/12 통권 167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5억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수입대행자 명의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20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반영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거래쌍방간 법정분쟁결과 법정이자 vs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가?>

개념, 구분	과세여부, 소득종류, 적용원천징수세율
법정이자 판결	당사자간 민사소송결과 판결금에 대한 소송기간의 법정이자 vs 이자소득?
대금업자	대금업 표방하고 금전대여사업은 금융업 사업수익임(원천징수 안함)
원천징수세율	비영업 이자소득이면 원천징수(법인 25%, 개인 27.5%) 후 지급, 이자소득아니면 미징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 기타소득 : 원천세율 22%)
손해배상금의 이자	손해의 배상액은 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안함(통칙 16-0...2), 원천징수 없음
위약·해약 판결이자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 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으로 봄(통칙 16-0...2), 22% 원천징수
계약취소 환불이자	손해배상이 아니고, 쟁점대금이 실질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임(개인 27.5%, 법인 25% 원천징수)
금전사용대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소비대차전환이나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은 이자소득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계약금 등의 반환이자	거래쌍방 계약금 과다지급반환 판결 추가이자 vs,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
채권연장이자	외상매출금,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관련금액 : 이자소득 아니고 일반수입(익금)임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79호 / 주간 24호

2024. 6. 12.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거대 쌍방간 법정분쟁결과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가?	표지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직원 주차비 지원 과세 여부 - 해외연수 참가 경비 대리수령 후 여행사 지급시 처리방법 - 주민세 사업소분 환급 관련 - 중국 법무법인 법률자문료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2 3
눈에맞는 절세미인	수입대행자 명의로 발급받은 수입세금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	4
매일 절세재무요점	- 배당소득증대세제 개요 - 양도소득세 요약표	6 7
직장인 Survival	협력해야 다함께 성공한다	8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키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08, 2023.05.16) -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372, 2023.12.15)	9 10
세 정 뉴 스 와 해 설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 코인 계좌도 포함	11
마 케 팅 Tax consulting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반영함	9
세 무 정 보	-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12 18
회 계 정 보	- 20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35 43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17

직원 주차비 지원 과세 여부

Q 당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공공주차장과 계약 후 신청자에 한해 주차스팟에 대한 비용을 매달 지불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대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는 과세와 불공제 중 어느 타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매입 및 유지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직원의 승용차 주차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외연수 참가 경비 대리수령 후 여행사 지급시 처리방법

Q 당사에서는 사업과 관련있는 타사의 홍보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타사 참가자의 참가비는 각각의 회사에서 여행사의 인보이스 1인당 금액으로 부담하고, 업무편의상 당사가 해외연수 주최사로서 참가비를 입금 받아 여행사에 인보이스 총액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타사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예수금(대변) 처리 후 지급시 예수금 지출(차변)하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지요?

연수경비에 대해서는 회사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고, 당사도 타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여행사의 인보이스와 항공운임증명서, 호텔 인보이스를 전달했습니다.

A 1. 해외연수 관련 타회사 참가인원의 비용을 입금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예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시 예수금지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지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참여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애초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인보이스 등을 받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와 항공운임서 등 전달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환급 관련

Q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와 관련하여 당사 매장 및 본사 사무실이 동 건물에 위치하여 물건지 주소가 동일하나 균등분에 대한 세금이 2건으로 중복 고지된 점이 인정되어 담당 지자체로부터 환급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2018~2021년 분 해당)

(이전까지 2건으로 납부되었으나 금년 1건 납부 예정)

이와 관련 환급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관련 법령이나 예규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A 동일건물이나 인접장소에 협력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하나로 사업소로 인정하므로 주민세 사업소분도 하나로 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건물의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정책과-4231(20200928)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중국 법무법인 법률자문료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Q 중국의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평소에는 월 정액으로 납부를 하고 법률 이벤트 발생시 별 건으로 추가로 법률자문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률자문료 송금시 원천징수를 하고 송금을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A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중국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수입대행자 명의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물론 재화의 수입자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는 그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입대행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거래조건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를 수출자가 부담하기도 하는데,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해외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관련절차를 이행한 뒤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내사업자가 임가공용역,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원재료나 수리용 부품 등을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입대행자 명의로 교부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수입대행을 위탁한 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실제 수입주체인 위탁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대행자가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자신이 실제의 수입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입 관련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의 경우도 대행자 명의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입대행자는 반드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실제의 수입주체인 위탁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부가46015-4611(1999.11.17.)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수출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

거래조건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명의를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통관시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해외의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의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 서삼-1670, 2006.08.02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수입일 경과 후에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가능

물품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또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에 추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 서삼-1324, 2007.05.02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배당소득증대세제 개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 2유형)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원천징수대상자) 세율 14%▶9%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 세율 최대 38%▶25%
시행시기	2015년 1월부터 3년간 한시 적용

※ 기획재정부

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증여받는 사람	공제한도(10년간 합산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국세청



양도소득세 요약표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차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이외 토지·건물	1세대 1주택(공제율 : 보유기간 + 거주기간)		
		보유기간	거주기간	
	3년 이상~15년 이상 6%~30%	3년 이상~10년 이상 12%~40%	3년 이상*~10년 이상 12%~4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 적용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세율	<기본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구분	세율		
		'21.5.31.까지	'21.6.1.이후	
	2주택자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분양권	50%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조정대상지역 내·외 구분없음)	
	주택보유 기간별	1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40%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미등기 양도주택		70%	70%	
* <중과한시 배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5.5.9. 기간 중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협력해야 다 함께 성공한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성과주의가 기업에 도입된 후 회사 내에서는 직원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생겼다. 직원간의 경쟁은 얼핏 성과를 올리는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로를 라이벌로 보게 되면 좋은 정보가 있어도 나누지 않고, 업무 진행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 전체의 성과는 떨어지고 만다. 직원들이 서로를 동료로 믿고, 회사 전체의 실적을 함께 생각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정된 파이를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기보다는 협력해서 파이를 더 만들어 나누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다.

경쟁은 꼭 필요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승패를 따지며 일희일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최종 결과가 좋으면 되니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 편이 낫다. 과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정말 중요한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눈앞의 손익에 얽매이기 쉽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종 목적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길러야 한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라이벌이 실패하면 마음을 놓는다. 상대방이 한 번 실수했다고 지나치게 안심한 탓에 노력을 게을리해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많다. 또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에게 묘한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문제는 동기가 실수를 했을 때 회사 전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도우려 하지 않고 남몰래 기뻐하는 경우다. 또한 동료의 평판이 낮아졌으니 자신의 평판은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나태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의 평판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 상대와 관계 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반영함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08, 2023.05.16

질 의

- 당초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등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고지받은 사업자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 과세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징수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것임이다.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3210, 2023.05.31

질 의

-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펀딩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 신

보드게임을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을 통하여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 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 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

질 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제

출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 1안)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2안) 해당 지점*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된 지점

Ⅰ 회 신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경리하는 경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372, 2023.12.15

Ⅰ 질 의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2년 미만을 영위하고 이전한 경우, 공장 이전 후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특법 63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하나의 공장시설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두 업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2년 이상 영위한 업종은 폐업하고 2년 미만 영위한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코인 계좌도 포함

지난해 5억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준일 시점의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는 홈택스 및 손택스로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합계 잔액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으로 과거에 신고했어도 지난해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예상 대상자 1만2000명에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기에 놓치지 말고 가상자산까지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위반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참고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2) 및 안내문 내 쓰인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전화상담률 거의 100% 육박... ‘AI 홈택스’ 시대 온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정부 최초로 전화 상담률 98%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2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AI홈택스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동안에는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

초로 도입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과거 상담 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이 학습돼 있으며, 상담 4분의 1을 차지하는 간단 문의 처리가 가능하다.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아웃폼), 이용 방법 등 상세한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한다.

덕분에 경우별 상담 직원은 구체적 상담이나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 품질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둘째 아이도 적용되나요?’...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 배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최근 문의가 급증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했다.

나아가 ‘실수 바로잡기’ 코너를 통해 사례별 해결방법과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담았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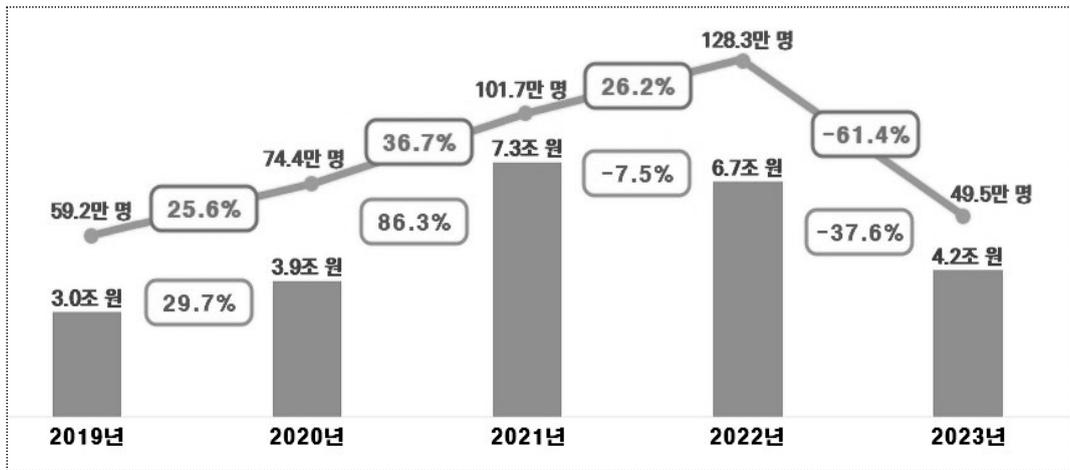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주 묻는 세금 이슈를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국세청, 2024. 6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습니다.

<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¹⁾, 주택분 세율 인하²⁾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 ~ 3% → 0.5% ~ 2.7%, (3주택 이상) 1.2% ~ 6% → 0.5% ~ 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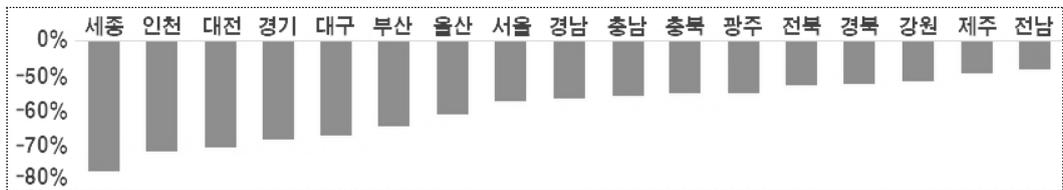
귀속연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2022년	104,491	2.0	14,764	1.4
2023년	95,759	1.9	13,698	1.4

□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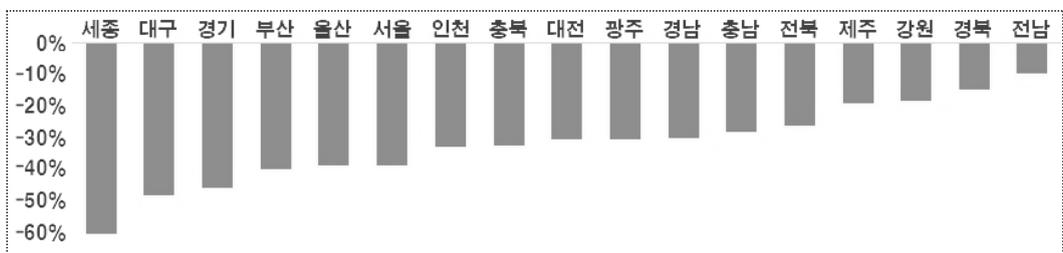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입니다.

< 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 >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입니다.

<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율 >



-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입니다.

□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



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습니다.

붙임 '23년 종합부동산세 통계 주요 내용

1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현황

□ 납세자 구분(개인·법인) 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282,943	6,719,809	1,205,889	3,197,464	77,054	3,522,345
'23년	495,193	4,195,109	417,156	988,509	78,037	3,206,600
증감률	△61.4	△37.6	△65.4	△69.1	1.3	△9.0

□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195,430	3,296,971	104,491	1,991,021	14,764	1,431,818
'23년	408,276	948,657	95,759	1,888,443	13,698	1,358,009
증감률	△65.8	△71.2	△8.3	△5.2	△7.2	△5.2

2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지역	인원			세액		
	'22년	'23년	증감률	'22년	'23년	증감률
전체	1,282,943	495,193	△61.4	6,719,809	4,195,109	△37.6
서울	591,019	255,204	△56.8	3,264,408	2,009,395	△38.4
인천	41,950	11,761	△72.0	230,558	155,237	△32.7
경기	355,830	111,642	△68.6	1,446,214	788,954	△45.4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강원	14,182	6,961	△50.9	93,243	76,488	△18.0
대전	25,816	7,564	△70.7	237,628	165,506	△30.4
충북	12,616	5,711	△54.7	59,812	40,663	△32.0
충남	20,711	9,269	△55.2	98,546	71,069	△27.9
세종	11,597	2,572	△77.8	34,886	13,979	△59.9
광주	14,791	6,740	△54.4	81,767	57,127	△30.1
전북	12,300	5,894	△52.1	71,115	52,785	△25.8
전남	10,831	5,708	△47.3	122,888	109,503	△10.9
대구	37,247	12,159	△67.4	147,878	77,350	△47.7
경북	17,445	8,380	△52.0	151,498	129,032	△14.8
부산	68,044	24,017	△64.7	354,480	214,924	△39.4
울산	12,450	4,885	△60.8	60,490	37,213	△38.5
경남	23,942	10,454	△56.3	172,293	121,052	△29.7
제주	12,172	6,272	△48.5	92,106	74,832	△18.8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역	'22년	'23년	증감률
서울시 전체	3,264,408	2,009,395	△38.4
강남구	800,111	511,625	△36.1
강동구	62,206	25,686	△58.7
강북구	10,666	4,471	△58.1
강서구	93,497	49,102	△47.5
관악구	31,882	11,963	△62.5
광진구	50,798	22,007	△56.7
구로구	34,043	15,577	△54.2
금천구	25,967	17,818	△31.4
노원구	30,821	6,007	△80.5
도봉구	13,527	2,977	△78.0

동대문구	32,154	13,691	△57.4
동작구	57,399	19,289	△66.4
마포구	97,396	51,774	△46.8
서대문구	39,036	22,429	△42.5
서초구	459,589	275,864	△40.0
성동구	104,548	32,619	△68.8
성북구	51,265	21,766	△57.5
송파구	227,430	86,048	△62.2
양천구	67,838	18,581	△72.6
영등포구	196,876	159,428	△19.0
용산구	193,099	114,070	△40.9
은평구	25,186	8,010	△68.2
종로구	133,273	111,791	△16.1
중구	411,114	402,841	△2.0
중랑구	14,685	3,962	△73.0

4 '23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1세대 1주택		일반 1~2주택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23년	111,315	91,267	182,551	210,451	57,087	154,656
증감률	△52.7	△64.4	△56.6	△60.0	△88.2	△91.8

* '22년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인원과 세액 포함

□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44,158	196,059	12,184*	515,769*
'23년	49,879	208,785	7,444	283,498
증감률	13.0	6.5	△41.9	△45.0

* '22년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인원과 세액 포함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31일 (금)	6월 3일 (월)	6월 4일 (화)	6월 5일 (수)
미 달 러 (USD)	1376.50	1381.60	1377.60	1373.10
일 본 엔 (JPY)	877.84	878.41	882.03	886.76
영 국 파 운 드 (GBP)	1752.15	1760.71	1764.71	1753.79
캐 나 다 달 러 (CAD)	1006.03	1014.02	1010.82	1004.06
홍 콩 달 러 (HKD)	176.09	176.68	176.16	175.74
위 안 화 (CNH)	189.18	190.48	189.58	189.16
유 로 화 (EUR)	1491.09	1499.17	1502.75	1494.00
호 주 달 러 (AUD)	912.69	919.45	921.96	912.97
싱 가 폴 달 러 (SGD)	1019.67	1022.69	1023.67	1019.8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2.62	293.52	292.67	292.02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4. 5

-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인거래자 등 1만 2천 명
 -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가. 신고 의무자

- ('23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나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신고
 -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 (신고의무 면제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4.1.1.~2023.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3.1.1.~2023.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나. 신고 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써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6월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에 해당합니다.
 -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급사업자에 개설한 지급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 지급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을 보유한 수탁형·중앙화 지급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급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p>신고의무자</p> <p>▷ '23.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p>	 <p>신고기준금액</p> <p>▷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 초과</p>
 <p>신고의무 면제자</p> <p>▷ 외국인거주자 : '14~'23년 국내거주 5년 이하 ▷ 재외국민 : '23년 국내거소기간 183일 이하</p>	 <p>신고기한</p> <p>▷ '24.7.1.(월)까지 신고</p>

다.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신고의무자는 2024.7.1.(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손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신고도움)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또한 올해도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인거래자 등 1만 2천 명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가.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 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지갑과 같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나.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3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3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단위 : 억 원)

계좌 \ 기준일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가.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MIN(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나. 미신고자 검증 및 제보 포상금

- (미신고자 검증)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경우 OECD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이 시행되면 실효적인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한눈에 보는 주요 개정내용

- 2024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2023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해외금융회사에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포함되어 2023.6월에 최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21.2.17. 이후 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무제한에서 위반연도별로 20억 원 한도로 경감되었습니다.
- 2020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재외국민 신고면제 요건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1년 전부터 183일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미(과소) 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019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 부과율이 20% 이하에서 13% 이상 20%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고의무자 - 개인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장기채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해외채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 예컨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나요?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 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신고의무자 - 법인 등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정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2023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24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법정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및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입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2023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3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4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3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4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단,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나요?
 -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입니다.
 - ※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해외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5월 1일 2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5월 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증권계좌에 일본국채(8월 31일 평가액 30억 원이 매월 말일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고대상계좌는 어떤 것인가요?(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 원을 예치한 B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 ※ 5월 2일 해지한 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도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차명계좌의 잔액도 합산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



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 원 넘게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2023년 6월(20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에 최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64~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WD*10B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입니다.

-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2호)

- 외화금액은 동일한데 환율변동에 의하여 연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원화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합산액이 최대 6억 원일 때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합산액이 최대일 때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 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화로 해야 하나요?
 - 신고서 서식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무엇인가요?
 -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3글자의 부호로 표시하며, 현재 제정된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중국 위안(CNY) 등
-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a.biz)의 [환율조회] 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과태료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억 원이 들어 있던 해외계좌가 누락된 사실이 2023년 8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2018년 ~ 20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액 20억 원을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과태료 \ 보유연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과태료율	10억 원	10%	10%	10%	10%	10%
과태료부과액		2억 원				

- ※ 만약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미(거짓)소명 과태료 (20%)가 연도별로 추가 부과됩니다.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관련자(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A계좌 최고잔액을 10월 31일 11억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 30일이 A계좌 8억 원, B계좌 4억 원 총 12억 원으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얼마입니까?

- 4억 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5.2.]

-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한 내국법인에게도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019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20년부터 미소명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①)
예를 들어 20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36(재판) 및 §44(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②)
-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통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드리며,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의견제출기간 내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질서위반행



위 규제법 §18②)되며 이후 이미 종결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 부과통지 후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위위반자가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나요?

- 행위위반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사망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 행정청은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위반자가 법인인 경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 24의2)

6 해외가상자산계좌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급사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ex : FTX)의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인가요?

-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도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1억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9억 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 방법은?
 -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 5.1억 원이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여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갑(계



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 : FTX)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하여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례 바이낸스 계정에 기준일 현재 비트코인 잔액 4억, 이더리움 잔액 3억인 경우

-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요?
 -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습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금융회사명"에 Binance, "⑪계좌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습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⑬기준일 잔액"에 7억 원을 적습니다.
-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⑭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 5억 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1.1.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신고). 따라서, 2021.12.31.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2022.1.1.이후 신고의무 발생분을 미신고 한 경우라면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4. 6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 (2,537사) 로 新외감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기업은 2.5% (65사) 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사 (3.9%) 입니다.

◆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3% (1,544사) 로 전기 (97.5%, 1,472사) 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기업 (2.7%, 43사) 중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손상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공정가치 평가 (금융상품)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 경영진·감사기구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 1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위험이 크므로 투자 의사 결정 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평가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경우 운영실태·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에 시정 계획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재무제표 감사의견

-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2,602사) 의 97.5% (2,537사) 로 예년 수준을 유지
- ◆ '적정 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98사 (3.9%) 포함 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주의 필요
- ◆ '非적정' 의견 (65사) 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1 재무제표 감사 적정 의견

- (개황)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2,602사*) 의 97.5% (2,537사) 로 新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 수준 유지**
 - * '23년 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
 - ** 적정의견 비중(%) : ('19) 97.2 → ('20) 97.0 → ('21) 97.2 → ('22) 97.9 → ('23) 97.5
 - (시장별) 코스피 (98.1%), 코스닥 (97.3%), 코넥스 (96.0%) 順
 - (규모별) 규모에 비례하여 2조 원 이상이 99.5% (非적정 태영건설 1사)로 가장 높고, 1천억 원 미만이 96.1%로 가장 낮음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시장별			규모별				합 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조원 이상	2조원~5천억원	5천억원~1천억원	1천억원 미만	
적정 의견 (적정 비중)	793 (98.1)	1,624 (97.3)	120 (96.0)	199 (99.5)	339 (99.4)	1,046 (97.8)	953 (96.1)	2,537 (97.5)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 의견 기업 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98사 (3.9%) 에 달함
 - *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적절히 공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별도 단락을 포함해야 함
 -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
 - * '22년에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사)의 25.9%가 '23년에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미기재 기업 (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2 재무제표 감사 非적정 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02사)의 2.5% (65사)로 전기(2.1%, 53사) 대비 소폭 증가(0.4%p↑, 12사↑)
 - (의견별) '의견거절' 기업은 57사로 전기(46사) 대비 11사 증가했고, '한정'은 8사로 전기(7사) 대비 1사 증가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분	'23년(A)				'22년(B)	증감(A-B)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의견거절	57	12	40	5	46	+11
한정	8	3	5	-	7	+ 1
합계 (非적정 비중)	65 (2.5)	15 (1.9)	45 (2.7)	5 (4.0)	53 (2.1)	+12 (+0.4)

-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기업(65사) 중 21사(32.3%)는 '22년 감사의견도 非적정으로 2년 연속 非적정에 해당
- (사유별) '계속기업 불확실성(21.6%, 33사)'이 가장 많았고,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중속·관계기업(14.4%, 22건)', '기초 재무제표(10.5%, 16건)', '특수관계자 거래(7.8%, 12건)' 등이 다수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 1) (단위 : 건, %, %p)

非적정 사유 2)	'22년(A)		'23년(B)		증감(B-A)	
• 계속기업 불확실성	27	(23.5)	33	(21.6)	+ 6	(Δ1.9)
• 감사 범위 제한	88	(76.5)	120	(78.4)	+32	(+1.9)
- 중속·관계기업 손상 등	12	(10.4)	22	(14.4)	+10	(+4.0)
- 기초 재무제표 3)	15	(13.0)	16	(10.5)	+ 1	(Δ2.5)
- 특수관계자 거래	7	(6.1)	12	(7.8)	+ 5	(+1.7)
- 투자·자금거래(CB 등)	12	(10.4)	11	(7.2)	Δ 1	(Δ3.2)
- 임원 횡령 등 회계부정	5	(4.3)	8	(5.2)	+ 3	(+0.9)
- 내부 통제 미비	6	(5.3)	6	(3.9)	-	(Δ1.4)
- 기타 ⁴⁾	31	(27.0)	45	(29.4)	+14	(+2.4)
합계	115	(100.0)	153	(100.0)	+38	

- * 1) 괄호 안은 당해 연도 非적정 사유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2) 非적정 사유가 다수이면 중복 계산
- 3) 전기 감사의견이 非적정(14사)이거나, 당기 횡령 발생(2사)으로 기초 재무제표 신뢰성이 미흡
- 4) 재고자산, 매출, 금융자산 평가, 기타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587사)의 97.3% (1,544사)로 전기 (97.5%) 와 유사
-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사 (2.7%) 로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26사와 '부적정 (중요한 취약점 존재)' 17사로 구성
- ◆ 부적정 (17사)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공정가치 평가·대손 설정'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 통제나, '자금 거래'와 관련된 부정 예방·적발 통제 등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1 내부회계 감사 적정 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587사*) 의 97.3% (1,544사) 로 전기(97.5%) 와 유사
 - * 내부회계 감사 대상 : ('19) 자산 2조 원 이상 → ('20) 5천억 원 이상 → ('22) 1천억 원 이상, 검토대상인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법인과 운영 예외 회사(종업원수 6인 미만) 등은 제외
 - (시장별) 코스피 (97.5%) 기업의 적정 비중이 코스닥 (97.1%)을 소폭 상회하나 격차는 0.4%p로 미미
 - (규모별) 규모에 비례하여 2조 원 이상의 적정 비중이 99.5%로 가장 높고, 5천억 원 미만이 96.3%로 가장 낮음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시장별			규모별				합 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조원 이상	2조원~5천억원	5천억원~1천억원	1천억원 미만	
적정 의견 (적정 비중)	730 (97.5)	808 (97.1)	6 (100.0)	198 (99.5)	334 (99.1)	980 (96.7)	32 (84.2)	1,544 (97.3)

-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23년 최초 시행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경우 대상기업 (181사)* 중 1사 (태영건설,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 거절) 를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
 - * 연결 내부회계 감사 대상 : ('23) 자산 2조 원 이상 → ('29) 5천억 원 이상 → ('30) 전체

☞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법인 (자산 2조원 이상) 부터 단계적 시행하였고, 시행 시기도 유예*함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
* 연결 내부회계 시행 1년 유예 ('22년→'23년), 별도 신청법인은 2년 유예

2 내부회계 감사 非적정 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1,587사) 의 2.7% (43사) 로 전기 (2.5%, 38사) 대비 소폭 증가 (0.2%p↑, 5사↑)
 - (의견별) '부적정 (중요한 취약점 有)'은 17사로 전기 대비 3사 감소했고, '의견 거절 (감사 범위 제한)'은 26사로 8사 증가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23년(A)				'22년(B)	증감(A-B)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부 적 정	17	9	8	-	20	Δ3
의견거절	26	10	16	-	18	+8
합 계 (非적정 비중)	43 (2.7)	19 (2.5)	24 (2.9)	- (-)	38 (2.5)	+5 (+0.2)

-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하여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 대손 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비가 다수
 -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 내부회계 감사의견 부적정 기업의 중요한 취약점 예시

내부통제 미비	회계처리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통제 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 손상차손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통제 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 측정 공정가치 금융자산과 관련 평가손익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 관계기업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는 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업 대여금과 관련 대손상각비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거래) 인감 사용의 완전성·정확성을 검토하는 내부 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가 불완전하게 기록되거나, 우발상황이 부적절하게 공시될 가능성

3 경영진·감사기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43사) 중에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사 (20.9%), 이에 대한 '시정 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사 (18.6%)에 불과
 - 유의 사항 배포 등을 통해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 계획을 마련·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

<p>◆ 경영진·감사기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운영실태 보고서 (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기구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취약점 등에 대한 적시 시정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 • (감사·감사위원회)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평가보고서 (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태 보고서 상의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확인 등 포함

4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43사)의 대부분 (29사)은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나, 일부(14사)는 '적정' 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이 가능하나,
 - 회계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보완할 필요

'23년 내부회계 非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단위 : 사, %)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非적정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非적정	의견거절		한정	
내부회계 부 적 정	17 (39.5)	6 (14.0)	3 (7.0)	3 (7.0)	11 (25.5)
내부회계 의견거절	26 (60.5)	23 (53.5)	23 (53.5)	- (-)	3 (7.0)
합 계	43 (100.0)	29 (67.5)	26 (60.5)	3 (7.0)	14 (32.5)

* 괄호 안은 전체 非적정 상장법인 (43사) 중 차지하는 비중

III 회사 및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1 회사 유의사항

① (재무제표 非적정)

감사대비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세요

- ✓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 CB 등 투자·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의 적절성 등을 사전 점검
- ※ 재무제표 非적정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 CB 등 투자·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지속 발생

② (내부회계 非적정)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세요

- ✓ 손상·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오류 예방에 효과적인지 점검
- ※ 내부회계 非적정은 주로 손상·공정가치 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

③ (경영진·감사기구)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을 공시하세요

- ✓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기재하고,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임에도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 계획을 미기재한 상장법인이 다수
- ⇒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에서 「외감규정 시행



세칙」으로 이관 ('24년 시행) 됨에 따라 향후 기재 여부를 점검 예정

2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①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 ✓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상장법인은 위험이 크므로 투자 의사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

② (감사의견 비적정)

非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 ✓ 재무제표 비적정 및 내부회계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 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 *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 손상·평가·대손 및 자금거래 관련 통제 미비 등

③ (중요한 취약점)

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을 확인하세요

- ✓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회계오류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에 시정 계획 기재 여부 등을 확인
- ※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非적정'이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이 존재

IV 향후 계획

-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배포·안내
-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 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 유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정착을 지속 지원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국세청, 2024. 5

I. 추진 배경

-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년 2건 → '22년 7건 → '23년 1건 → '24년(1~4월) 3건

- 이러한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II.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

1 본인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채무 조작(A사)

가 횡령발생 경위

- (횡령시)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

*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도 송금이 가능하고 전표입력 시 상급자 승인절차가 부재

- 甲과장은 회사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



- (결산시) 甲과장은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
 - * 상급자 승인절차 없이 전표입력 가능[(차) 매입채무 XXX / (대) 현금 XXX(횡령금액)]
- 결산 직후 매입채무 허위 회계처리를 원래 금액으로 복원(역분개)
 - ※ 감사인이 매입채무 금액 확인을 위해 동 거래처에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을 요구하였으나, 甲과장은 거래처 사정 등을 사유로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였고 위조된 구매내역 영수증을 감사인에게 대체 증빙으로 제출
- (적발) 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 등으로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甲과장은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을 약 5년 이상 반복하였고 결국 누적된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횡령 사실 자백

나 내부통제 취약점

- ❶ (승인절차 미비) 상급자 승인없이 이체계좌 등록 및 전표입력 가능
 - 회사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대금 지급이 제한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재무팀 직원이 승인 없이 임의의 계좌번호를 이체계좌로 등록 및 수정 가능
 - 재무팀 팀원들은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posting)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❷ (업무분리·교체 無) 업무분장 미비, 1인이 장기간 자금업무 수행
 - 甲과장은 재무팀에서 자금과 회계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전표관리 등 권한도 부여받아 관련된 증빙을 손쉽게 조작
 - 甲과장은 혼자서 자금관리업무를 전담하여 계좌관리 및 회계처리 미비점을 쉽게 파악
- ❸ (점점 부실)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장부상 예금 잔액과 은행 실제잔고의 일치 여부를 매일 대사하여야하나 동 절차 미수행

2 잔액증빙 서류 위조를 통한 횡령(B사)

가

횡령발생 경위

- (횡령시) B사 乙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乙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유용
 - * 회사 증권계좌의 경우 은행계좌와 달리 회사 ERP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체·잔액점검 등의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
- (결산시) 乙팀장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중인 것처럼 회계장부 조작
 - * 자금일보 등을 재무팀 실무자가 작성하고 상급자 확인절차 부재
- (적발) 주식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乙팀장은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하였고 회사는 乙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 인지
 - ※ 乙팀장은 동 사건 발생 이전에도 부적격 비용처리, 유용 등으로 회사 내부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회사는 징계 처분 이후에도 乙팀장의 직무를 교체하지 않음

나

내부통제 취약점

- ① (승인절차 미비) 재무팀장이 공인인증서, OTP를 통해 담당임원 등 상급자 승인 및 전표처리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출금 가능*
 - * 공인인증서, OTP를 보관자 분리 없이 재무팀장이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운영
 - 신규계좌개설 시 상급자 승인절차가 없고, 개설된 계좌를 ERP, 펌뱅킹 시스템에 등록하는 통제절차도 부재
- ② (업무분리·교체 無) 乙팀장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표관리 등 회계업무 권한도 부여받아 직접 회계기록을 조작



- ③ (점검 부실) 회사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사용시 신청서 또는 근거서류 등의 확인절차가 부재하여, 乙팀장이 횡령에 사용할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 가능하도록 노출
 - 승인권자가 자금일보를 형식적으로만 결재하고 잔액을 전산자료(은행 펌뱅킹 화면)와 대사하는 절차 누락
- ④ (내부감사 부실-위반담당자 미교체) 회사는 乙팀장이 과거 자금관리 내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내부징계 처분만 하고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음

3 횡령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C사)

가

횡령발생 경위

- (횡령시) C사 경리팀 직원 丙부장은 결재 없이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
 - * 수입대금 결제 등을 위한 단기 기업대출
 - ** 대출 실행은 내규 상 대표이사 결재사안이나 丙부장은 예비용으로 보관 중인 차입신청서(사용인감을 날인한 상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은행에 제출
- (결산시) 丙부장은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상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여 횡령사실 은폐
 - * 회계감사 시 조회를 피하기 위해 잔액이 작고 최근 거래가 없었던 거래처로 위장
 - 또한, 丙부장은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예금현황 점검(월별) 시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았던 점을 악용하여 예금현황에 계좌별 잔액 및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
- (적발) 11년에 걸친 횡령 결과 횡령액이 누적되자 丙부장은 무단결근 후 잠적하였고 회사는 잠적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 인지

나

내부통제 취약점

- ① (승인절차 미비)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posting)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인터넷뱅킹 신청 승인절차가 없고 용도·이체한도도 미확인

- ② (업무분리·교체 無) 인터넷뱅킹용 OTP 및 공인인증서 사용권한을 분리하지 않아 丙부장이 OTP·공인인증서를 통해 차입으로 입금된 현금을 본인계좌로 통제절차 없이 송금
- ③ (점검 부실) 재무담당이사·대표이사는 월별로 입출금내역 및 잔액등 예금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숫자만 확인하고 통장 실물 등 증빙을 확인하지 않아 횡령 적발에 실패
- ④ (내부감사 부실)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임명하고 실제로는 내부감사 관련업무를 감사가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내부감사기능 부재

III. 회사 유의사항

① (승인절차)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를 갖추세요

- ✓ 계좌개설 시 관리자 승인 후에만 개설 가능토록 통제절차를 갖추고 출금 및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마련
 - * 불가피하게 미등록계좌에 이체한 경우 반드시 사후승인절차 구비
 - ※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CFO의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

② (업무분리)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하세요

- ✓ 오류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토록 업무분장하고 전표입력 시 상급자의 전표 승인절차 구축
 - ※ 지적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직원이 횡령 후 전표입력을 통해 현금부족액을 매출채권 혹은 매입지급 지급액으로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횡령사실 은폐

③ (업무교체)

자금,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 ✓ 자금 및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적절한 주기로 순환 및 교체하여 특정 직원이 너무 오랜 기간 자금·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
 - ※ 지적사례 모두 특정 직원이 장기간(최소 5년 이상) 자금업무 담당



④ (잔고점검)

현금과 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세요

- ✓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
 - * 회사 장부와 잔액증명서(외부증빙) 및 펌뱅킹 화면 등을 반드시 대사

⑤ (보관·승인)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를 갖추세요

- ✓ 통장, 법인카드, 인감, OTP(공인인증서) 등 중요서류는 각각 다른 담당자가 보관토록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

⑥ (내부감사)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갖추세요

- ✓ 영업 등 업무담당자가 감사를 겸임하지 않도록 독립된 내부감사를 임명하고 내부통제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 구축

IV. 향후 계획

-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
 -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FY2023부터 본격 감리 대상